

「도로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1. 개정 이유

점용료 감면기준 등 도로법 개정(공포 '22.06.10., 시행 '22.12.11.)에 따라 하위법령을 정비하고, 개인사업자 등의 점용료 부가세 환급을 위한 절차를 개선하려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점용료 감면기준 명확화(안 제36조)

- 1) 도로법 제68조제2호의 점용료 감면조항 중 “재해”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개정되어 하위법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 2) 도로공사로 점용목적을 완전히 상실한 경우 도로점용료 감면 규정 신설

나. 권리·의무의 승계 신고 기한 완화(안 제50조, 별지 제27호서식)

- 1) 도로법 제106조제2호의 권리·의무 승계 신고 기한이 “1개월”에서 “2개월”로 개정되어 하위법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다. 개인사업자 등의 점용료 세금계산서 발급 및 부가세 환급 절차 개선 (안 별지 제24호서식, 제46호서식)

- 1) 도로점용허가 신청서 등에 개인사업자 등의 세금계산서 발급 및 부

가세 환급에 필요한 정보(상호, 사업자등록번호)가 누락되어 별도 확인하는 등 불편을 초래함에 따라 이를 추가하려는 것임

★ 부가가치세법 제34조의2에 따라 매입세액 공제를 위한 세금계산서 발급 시 상호(또는 법인명) 및 사업자등록번호(개인 또는 법인) 기재 필요

2) 서식 개정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절차 개선으로 개인사업자 등의 부가세 환급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도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도로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의 제목 “(재해 등에 따른 점용료의 감면)”을 “재난 등에 따른 점용료의 감면)”으로 하고, 같은 조 중 “재해나”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로 한다.

제50조 중 “30일”을 “60일”로 한다.

별지 제24호서식과 제27호서식, 제46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2년 1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6조(<u>재해 등에 따른 점용료의 감면</u>) 영 제73조제3항제2호에서 <u>재해나</u>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의 정도에 따른 점용료의 감면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 3. (생략) 4. (신설)	제36조(<u>재난 등에 따른 점용료의 감면</u>) ----- <u>「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u> <u>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u> - ----- ----- 1. ~ 3. (현행과 같음) 4. <u>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도로공사로 점용 목적을 완전히 상실한 경우에는 상실한 기간에 대한 점용료의 전액을 면제한다.</u>
제50조(권리 · 의무의 승계신고) ① 법 제106조제2항에 따라 권리 · 의무의 승계신고를 하려는 자는 상속일 · 양수일 또는 분할 · 합병일부터 <u>30일</u> 이내에 별지 제46호서식의 권리 · 의무의 승계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도로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 3. (생략) ② (생략)	제50조(권리 · 의무의 승계신고) ① ----- ----- ----- ----- <u>60일</u> ----- ----- ----- ----- ----- ----- ----- 1. ~ 3.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도로점용허가 신청서

※ 뒤쪽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뒤쪽 참조
신청인	성명[사업자의 경우 상호(또는 법인명) 및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또는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개인 또는 법인)	
	주소(법인의 경우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휴대전화번호	전화번호	전자우편
신청내용	도로의 종류	노선번호 (노선명) ()	
	①점용의 목적		
	②점용의 장소 및 면적		
	점용기간	굴착기간	
	점용물의 구조		
	③공사의 방법		
	공사의 시기		
	④도로의 복구방법		

「도로법」 제6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도로관리청 귀하

첨부서류	1. 설계도면(전자도면으로 한정합니다). 다만, 도로의 굴착을 수반하는 도로점용허가의 신청인 경우로서 「도로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에 따라 제출한 사업계획서대로 도로점용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도로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경우로 한정합니다)는 제외합니다. 2. 도로의 굴착을 수반하는 도로점용허가의 신청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주요지하매설물 관리자의 의견서[「도로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에 따라 제출한 사업계획서대로 도로점용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도로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경우로 한정합니다)는 제외합니다] 나. 주요지하매설물의 사후관리계획(신청인이 주요지하매설물의 관리자인 경우로 한정합니다) 다. 「도로법 시행령」 제62조에 따른 도로관리심의회의 심의·조정 결과를 반영한 안전대책 등에 관한 서류	⑤수수료 1,000원 또는 행정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
------	---	--

유의사항

근거 법률 도로구역에서의 도로점용은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도로법」 제61조제1항).

1.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도로법」 제72조 및 제114조제6호).
2. 허가를 받은 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도로법」 제117조제2항제1호).
3.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의 경우에는 도로점용허가 신청 전에 점용에 관한 사업계획서 등을 도로 관리청에 제출하여 도로관리심의회의 조정을 받아야 합니다(「도로법 시행령」 제56조제1항).
4. 점용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작성방법

1. ①에는 휴게소, 주유소, 공장, 아파트, 진입로 등 점용목적에 적습니다.
2. ② 중 점용 장소의 면적의 경우 축척 1,200분의 1 이상의 평면도에 도로중심선에서의 좌우거리 및 위치를 표시합니다. 다만, 「도로법 시행령」 제55조제6호·제8호 및 제12호의 경우에는 도로중심선으로부터 좌우거리 및 위치를 표시하지 않습니다.
3. ③에는 점용목적물이 지하에 매설되어 있는 경우 공사방법(노면굴착시공 또는 압입시공)을 적습니다.
4. ④에는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의 경우 신청인 또는 도로관리청(허가자) 복구로 적습니다.
5. ⑤에는 도로관리청이 국토교통부장관인 경우에는 수입인지를 붙이고, 도로관리청이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및 구청장인 경우에는 해당 도로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방법에 따릅니다.

처리기간

점용의 구분	특별시			광역시 및 도			국토교통부		
	접수	처리	기간	접수	처리	기간	접수	처리	기간
도로의 일반점용	동	구	5일 (3일)	구·읍·면	시·군	5일 (3일)	지방국토관리청 국토관리사무소	지방국토관리청 국토관리사무소	7일 (5일)
도로의 일시점용	동	시	2일	구·시·읍·면	구·시·읍·면	2일			7일 (5일)
아치 및 육교 사용	시	시	4일 (3일)	시·군	시·군	4일 (3일)			7일 (3일)
공작물의 설치	구	구	10일 (5일)	구·시·군	시·도	8일 (5일)			7일 (5일)
도로의 굴착	구	구	10일 (5일)	구·시·군	구·시·군	5일 (3일)			7일 (5일)
비고	1. 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의 경우 도로점용 허가신청은 직접 접수하고 처리하며, 그 처리기간은 점용의 구분에 따라 광역시 및 도의 처리기간을 적용합니다. 2. ()안의 일수는 전체 처리기간 중 경찰청(경찰서)과의 협의처리기간입니다.								

신청안내 및 처리절차

신청하는 곳	1. 고속국도: 한국도로공사지사 2. 일반국도: 국토관리사무소 3. 특별시도·광역시도·지방도·시도·군도 및 구도: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시·군 및 구(읍·면·동)	담당부서	1. 고속국도: 도로과 2. 일반국도: 보수과 3. 특별시도·광역시도·지방도·시도·군도 및 구도: 건설과 또는 건설관리과
--------	--	------	---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허가증 발급
신청인		도로관리청		도로관리청		도로관리청		도로관리청

제 호			
도로점용 허가증			
주 소 (법인의 경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성 명 (법인의 경우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생 년 월 일 (법인의 경우 법인등록번호)			
도 로 의 종 류		노 선 명	
점 용 의 장 소			
점 용 면 적			
점 용 기 간	년 월	일부 일	부터 까지 (개월 일간)
허 가 조 건			
「도로법」 제6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로점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도로관리청 직인			
<안 내> 도로점용허가에 대한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는 「도로법」 제10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0조에 따라 상속일·양수일 또는 분할·합병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권리·의무의 승계신고서에 승계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도로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같은 법 제117조제3항제3호에 따라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권리·의무의 승계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①승계인	성명[사업자의 경우 상호(또는 법인명) 및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또는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개인 또는 법인)	
	주소(법인의 경우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휴대전화번호	전화번호	전자우편
신고사항	허가번호		
	권리·의무의 내용 및 취득 근거		
	승계 사유		

「도로법」 제10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②피승계인 (서명 또는 인)

승 계 인 (서명 또는 인)

도로관리청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권리·의무의 취득에 관한 허가 관련 내역서 2. 권리·의무의 양도에 관한 계약서(권리·의무의 양도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3. 상속인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상속받은 경우에만 해당하며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를 확인하는 데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의 분할·합병의 경우: 분할·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분할·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상속의 경우: 상속인의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상속받은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가족관계등록전산 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작성방법

- ①란 에는 권리·의무를 승계받는 자의 정보를 적습니다.
- ②피승계인의 서명 또는 인은 「도로법」 제106조제1항제1호·제3호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생략할 수 있습니다.

처리절차

